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66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이정현 · 허성무 · 박홍배
강준현 · 조인철 · 박선원
김병주 · 김우영 · 김 현
손명수 · 정혜경 · 이훈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외국인투자의 범 위에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조제3항에”를 각각 “제4조제4항에”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①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

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 안전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중 “외국인투자지역”을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② (생략) <u><신설></u></p>	<p>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외국인투자 의 범위에는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기 구를 통하여 경영상 지배권을 실 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 유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술 또는 정 보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 다.</u></p>
<p>③·④ (생략)</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p>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 안전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
부 장관, 주무부 장관 또는 시·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
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
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외국인투
자지역-----

-----.